

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47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형근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문희, 오세원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2. 1. 1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 선고 2019가단20326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11. 19. 접수 제55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는 혼인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 피고와 D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99. 8.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11. 19. 접수 제55905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사리분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부담부증여인데, 피고는 원고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7행의 “을 제2~12, 15, 16, 23, 2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6, 10, 14, 15호증, 을 제2 내지 12, 15 내지 18, 22, 23,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치고, 제5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4번째행부터 제5쪽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⑪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의미하고(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 그 증상은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률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과 원고, 피고, B, F, D의 관계 및 서로 나누었던 대화나 메시지의 내용(을 제17, 22호증 참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을 제23호증)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증인 F의 증언이나 G의 진술서(갑 제14호증), D의 진술서(갑 제6, 15호증), B의 진술서(갑 제10호증)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증여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양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민법 제556조 제2항에 따라 해제원인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6월의 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해제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

①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가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서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취지 참조).

②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지급하는 월 차임은 계속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어왔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8. 11.경 원고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대전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는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 약 2~3주간 미국을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24시간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원고를 맡긴 후 2018. 12. 말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 B와 이종사촌인 F(또는 원고의 아들 D과 그 배우자)는 2019. 1. 3. 피고의 대전 주거지를 방문하여 원고를 데리고 나온 후 부산으로 내려갔고, 이후부터 피고는 원고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의 내용에 ‘함께 거주하면서 모실 것’이 항상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을 제3호증의 증여계약서에도 구체적인 부양의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수영구 H 외 3필지 I아파트 J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639.535㎡

2 내지 3의 각층 681.135㎡

4 내지 15의 각층 679.335㎡

지하 681.0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 수영구 H 대 10,095㎡

2. 부산 수영구 K 대 20,631㎡

3. 부산 수영구 L 대 18,614㎡

4. 부산 수영구 M 대 147㎡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4층 N호 철근콘크리트조 41.46㎡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대지권 비율 4,934,000분의 2,523

4 소유권대지권 비율 14,700분의 39

